

# 이헌영의 「嶠繡集略」을 통해 본 암행어사의 실상과 경상도 지방관

김 현 영\*

- |                      |                        |
|----------------------|------------------------|
| I. 머리말               | IV. 서계·별단에 나타난 경상도 지방관 |
| II. 이헌영의 일생과 「교수집략」  | V. 맺음말                 |
| III. 일기를 통해 본 어사의 실상 |                        |

## 국문초록

조선후기에는 국왕을 대신하여 지방을 통치하는 지역의 권력자인 守令이나 邊將들을 감시, 감독하는 관찰사와 중복이 되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근 신료를 파견하여 지방관을 거둬 감시·감독하는 암행어사 제도가 정기화되고 체계화되어 있었다. 본 논문은 조선 말기인 1882년 경상우도 암행어사로 파견된 종친 관료인 이헌영이 경상우도 암행어사 시기의 전모를 기록한 「교수집략」을 통하여 경상도 지방관과 암행어사 활동의 실상을 검토하였다.

암행어사의 임무는 국왕이 내린 봉서와 사목책에 적혀 있다. 봉서에는

---

\*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연구관 / 전자우편 : khy55@history.go.kr

특히 국왕이 당부한 내용이, 사목책에는 전부터 내려오던 암행어사 조사, 염탐의 매뉴얼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경상우도 암행어사의 명을 받은 이현영은 평소에 그를 도와주던 오위장 급의 인원과 역졸들 10여 명에게 연락하여 암행어사의 임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봉서와 사목책의 지시를 토대로 여러 달에 걸쳐서 염탐하고 순행하여 처리한 최종적인 보고서는 서계와 별단으로 국왕에게 제출되었다. 국왕은 서계와 별단을 토대로 암행어사를 직접 면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순행 지역의 지방관에 대한 처벌과 표창 그리고 민은과 폐막에 대한 조치를 해당 부서에 지시하였다.

암행어사는 10여 명의 염객들을 3~4개 팀으로 나누어 각 지역을 두루 암행 염탐하였다. 염객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위험한 경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암행어사라고 하여 모든 업무를 비밀리에 처리하지는 않았다. 경상감사에게는 공식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다른 수령, 변장들도 암행어사의 염탐 사실을 눈치 채고 있었다. 암행어사는 자신과 염객들의 수집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각 지역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출도를 하였다. 수령이나 변장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출도를 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노문을 보내어 위엄을 갖추어 공개리에 출도를 하기도 하였다. 출도를 한 기간은 7일 내지 10일에 이르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인근 지역의 文簿와 囚徒를 査閱하고 각읍에서 보고한 報狀이나 민인들의 民狀을 제결하였다. 또한 몇 개의 읍에서는 봉고파직하여 이웃 읍에 문부와 열쇠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 주제어

암행어사, 경상도, 지방관, 李鏞永, 嶠繡集略, 封書, 事目, 出道, 封庫, 罷職

## I. 머리말

암행어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이 일찍부터 익히 들어오던 이야기이다. 암행어사 박문수 설화에서부터,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출도하는 것까지, 어렸을 때부터 친근하게 배워왔다. 그러나 정작 암행어사의 실체에 대해서나, 또는 그러한 설화나 소설에 나오는 암행어사가 어디까지 진실일까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의 국가 체제에서는 국왕을 대신하여 지방을 통치하는 지역의 권력자인 守備이나 邊將들에 대하여 관찰사가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사의 기능과 중복이 되는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지방관을 감사·감독하는 것은, 물론 시행 초기에는 기능 중복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암행어사의 순기능으로 인하여 조선 후기에 들어서서는 정기화되고 체계화되었다.<sup>1)</sup>

본 논문은 조선 말기인 1882년 경상우도 암행어사로 파견된 李鏞永(1837~1908)이 경상우도 암행어사 시기의 전모를 기록한 「嶠繡集略」을 통하여 경상도 지방관과 암행어사 활동의 실상을 들여 보려고 한다. 이현

---

1) 암행어사에 관한 그동안의 논저는 제도사적인 측면, 사회사적 측면, 생활사미사사적 측면, 행정사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조명되어 왔다. <별표> 연구 문헌 목록 참조) 다산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도 암행어사를 3년에 한 번 정도 파견을 정례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牧民心書』 吏典 考功條)

1881년 이후 파견된 어사를 연대기에서 검색해보면, 1881년(고종18)에 박정양, 조준영, 강문형, 심상학, 이현영, 엄세영 등을 동래부에 암행어사로 파견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일본에 파견한 조사시찰단이었고, 1883년(고종20)에 이견창(경기), 이도재(경상좌도), 이현영(경상우도), 박영교(전라도), 류석(충청좌도)을 파견하였으며, 1886년(고종23)에는 이범조(충청우도), 조병로(경상우도)를 파견하였고, 1892년(고종29)에는 김사철(경상도), 이중하(충청도), 이면상(전라도)를 파견하여 비정기적으로 암행어사를 파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영은 고종의 총애를 받았던 종친 관료로서 대원군의 종친 우대 정책에 의하여 宗親應製로 文科丙科에 합격하여 벼슬살이를 시작하여, 내외의 요직을 거쳐 경상북도관찰사의 직을 최후로 일제 식민지가 되기 직전에 사망하였다.

그는 내외의 관직을 역임하면서 가는 곳마다 자신의 주요 문서나 기록을 정리하여 「○○集略」으로 남겼다. 중앙 관료로서는 홍문관 수찬 시에 經筵, 勉陳 등의 기록을 정리한 「瀛館集略」 한 종류만 남아 있지만, 지방관이나 암행어사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임명을 받아서 복명을 할 때까지의 대부분의 기록을 정리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방대한 자료로 남겼다.

즉 최초로 지방관에 나간 부안현감 시기의 자료인 「扶風集略」에서 시작하여 정주목사 시기의 자료인 「新安集略」, 의주부윤 시기의 자료인 「龍灣集略」, 영흥부사 시기의 자료인 「永府集略」과 경기와 경상우도 두 차례의 암행어사 시기의 자료인 「畿繡集略」과 「嶠繡集略」 등이 있으며, 경상감사와 충청감사 또한 경상북도관찰사 시기의 자료인 「嶠藩集略」, 「錦藩集略」, 「再嶠集略」 등이 있다. 또한 고종은 이현영을 세관이나 무역의 진흥을 전문으로 하는 테크노크라트로 육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1881년의 朝土視察團(흔히 紳士遊覽團이라고 불려왔다)의 기록인 「日槎集略」이나, 부산감리로서 대일 관계나 무역 관련 기록인 「釜署集略」, 의주부윤으로서 대중국 무역을 관장하던 기록인 「龍灣集略」도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관련하여 깊이 있게 분석해볼 만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이현영의 문집을 정리해둔 「敬窩漫錄」이 위의 집략 자료들을 검토할 때 아울러 고찰해야 할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현영의 『嶠繡集略』을 통해 본 압행어사의 실상과 경상도 지방관 김현영

<표 1> 東蓮 李鑣永 자료 목록(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순번	제목(주요 내용)	청구기호
1	瀛館集略(홍문관 수찬 시 일기) 1책	BC-古朝31-84
2	扶風集略(부안현감시 일기) 4책	BC-古朝93-15
3	畿繡集略(경기암행어사시 일기) 3책	BC-古朝31-81
4	新安集略(정주목사시 일기) 3책	BC-古朝93-14
5	日槎集略(신사유람단시 일기) 3권 3책	BC-古朝63-4
6	嶠繡集略(경상도암행어사시 일기) 4책	BC-古朝31-83
7	釜署集略(부산감리사의 일기) 4책	BC-古朝93-15
8	龍灣集略(의주부윤시의 일기) 3책	BC-古朝31-81
9	永府集略(영흥부사시의 일기) 1책	BC-古朝31-80
10	嶠藩集略(경상도관찰사시의 일기) 7책	BC-古朝93-16
11	錦藩集略(충청도관찰사시의 일기) 1책	BC-古朝56-나31
12	再嶠集略(경상북도관찰사시의 일기) 3책	BC-古朝93-13
13	敬窩漫錄(이현영의 문집) 7권 8책	古朝46-가271
14	鄉里約束(경상감사시 이현영이 간행한 향약) 1책	5210-62

## II. 이현영의 일생과 「교수집략」

먼저 이현영의 일생과 그의 저작 및 「교수집략」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보자.

이현영은 전주이씨 德興大院君 계의 濬派로서 1837년(헌종3)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18세에 冠禮를 하고 靑松金氏와 결혼을 하였으며, 서울 근교의 유생들과 어울려 공부를 하였다. 27세 때인



<그림 1> 이현영의 저술(집략)

1863년에는 전염병으로 부모 모두가 사망을 하는 변고를 겪기도 하였고, 이후 南學과 太學의 西齋色掌을 하였다. 1868년에는 부인 청송김씨가 사망하고, 2년 후에 驪興閔氏 周鎬의 딸과 재혼하였다. 34세이던 이해에 그는 宗親 應製로 直赴殿試하여 문과병과에 급제, 바로 홍문관 수찬에 제수되었다. 이로서 그의 긴 관료로서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의 관료 생활은 70세에 耆老所에 들어가 判敦寧司事를 마지막으로 중앙의 청요직과 지방관의 직책을 36년간 끊임없이 역임하였다. 먼저 내직으로는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봉상시, 장악원, 돈녕부, 승정원에서부터 이조, 병조 등 6조의 당상, 당하관을 두루 역임하고 대사성, 대사헌, 공조판서, 형조판서 등을 거쳤으며, 의정부 참정, 홍문관 학사, 종정경, 장예원경, 시종원경 등 전근대 관직에서 근대 관직으로 변화되는 과정의 주요 직임을 두루 거쳤다.

지방관으로서는 부안현감을 시작으로 하여, 정주목사, 의주부윤, 영흥부사, 경상도관찰사, 충청도관찰사, 경상북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고, 특별히 경기와 경상우도, 동래부 암행어사의 명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동래부 암행어사의 명은 중앙의 핵심 관료를 중심으로 일본의 근대적 개혁 성과를 시찰하는 朝土視察團의 임무였는데, 그는 특별히 稅關에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 <표2> 이현영의 일생<sup>2)</sup>

1837년(정유, 헌종3) 한성부에서 남. 華藏寺, 奉元寺, 新興寺 등지에서 공부.

1854년(갑인, 철종5, 18세) 18세 冠禮를 하고 靑松沈氏(砥平 茶谷) 遠聲의 딸과 결혼. 方外儒疏(尤庵을 모욕한 데 대한 반론)에 참여. 四忠祠, 道峰書院, 愍節祠 등의 有司.

1863년(계해, 철종14, 27세) 전염병으로 부모 모두 사망.

2) 「경와만록」 권7 年錄 요약.

1866년 南學西齋色掌.

1867년 太學西齋色掌.

1868년 부인 靑松沈氏 죽음.

1870년(경오, 고종7, 34세) 驪興閔氏 學生 周鎬의 딸과 결혼. 宗親應製 文科丙科에 급제. 弘文館 修撰(「영관집략」)에 제수. 中學教授, 兵曹正 郎.

1871년 정월, 太宗會 때 副掌憲. 3월, 親臨景武臺太宗會에 나감. 9월, 봉상시 첨정.

1872년(임신, 고종9, 36세) 3월, 사헌부 장령. 4월, 홍문관 부수찬. 9월 봉상시 관관. 西籍田 監세의 일로 개성부에 감. 11월, 장녀 결혼.

1873년(계유, 고종10, 37세) 2월, 홍문관 부교리. 12월, 부안현감.(「부 풍집략」)

1875년 9월, 홍문관 부교리.

1876년 6월, 장악원 정. 10월, 홍문관 부교리, 사간원 헌납.

1877년(정축, 고종14, 41세) 2월, 홍문관 부교리. 7월, 경기 암행어사. (「기수집략」) \*高宗實錄 15年 7月 19日(丁卯) 각도 암행어사 별단.

1878년(무인, 고종15, 42세) 3월, 어사 복명. 4월, 병조 참의, 승정원 동부승지. 6월, 정주 목사.(「신안집략」) 1880년 12월 遞歸.

1881년(신사, 고종18, 45세) 2월, 동래 암행어사(朝士視察團)(「일사집략」). 9월, 어사 복명. 10월, 敦寧府 都正. 12월, 機務衙門 副經理事.

1882년(임오, 고종19, 46세) 2월, 大司成에 通擬. 8월 承政院 右副承旨. 9월, 嶺南右道 暗行御史.(「교수집략」)

1883년(계미, 고종20, 47세) 6월, 어사 복명. 吏曹 參議. 8월, 우부승지. 統理衙門 草記로 釜山港 監理(「부서집략」)에 차임. 12월, 부산항에 도입.

1884년(갑신, 고종21, 48세) 8월, 義州 府尹.(「용만집략」)

1886년(병술, 고종23, 50세) 2월, 내무부 참의 차임. 駐筭日本東京商辦

- 事宜. 5월, 아들 쌍둥이를 낳아 형은 3세에 요절. 協辦內務府事 차임, 宗正卿 차임. 형조참판, 의금부 同義禁.
- 1887년(정해, 고종24, 51세) 2월, 좌승지. 윤4월, 병조참판. 5월, 政府堂上 차임, 좌승지. 사옹원 부제조.
- 1888년(무자, 고종25, 52세) 2월, 좌승지. 8월, 대사헌, 永興 府使.(「영부집략」) 民擾 진정.
- 1889년(기축, 고종26, 53세) 2월, 우부승지. 4월, 대사헌. 6월, 정부 당상 차임, 형조 참판. 7월, 이조 참판 通擬.
- 1890년(경인, 고종27, 54세) 정월, 이조 참판, 성균관 同成均. 윤2월, 좌승지. 7월 대사성. 10월, 좌승지, 공조 참판. 11월, 同敦寧, 병조 참판, 공조 참판. 12월, 璿源譜略 수정 공로로 嘉義大夫에 오름. 경상 감사(「교번집략」) 제수.
- 1891~92년 경상감사.
- 1893년(계사, 고종30, 57세) 3월, 파직. 춘추관 동춘추에 제수. 4월, 刑曹參判付宗正卿, 중추부 동지. 5월, 예조 참판. 7월, 한성부 좌윤. 8월, 병조 참판, 형조 참판.
- 1894년(갑오, 고종31, 58세) 2월, 의금부 동의금, 춘추관 지춘추. 資憲大夫에 오름. 漢城判尹付知宗正卿. 3월, 공조 판서, 형조 판서. 景慕宮 提調. 4월, 충청감사.(「금번집략」) 8월, 지돈녕, 의정부 都憲.
- 1895년(을미, 고종32, 59세) 4월, 궁내부 특진관. 윤5월, 내부대신.
- 1896년(병신, 고종33, 60세) 6월, 평안남도관찰사. 사직. 12월, 봉상시 제조, 빈전도감 제조.
- 1897년(정유, 고종34, 61세) 회갑.
- 1898년(무술, 고종35, 62세) 3월, 아들 秀一 冠禮. 平山申氏 秘書丞 申政均의 딸과 결혼. 7월, 중추원 의관. 9월, 의정부 참정.
- 1899년(기해, 고종36, 63세) 7월, 掌禮院卿. 12월, 太祖高皇帝影幀模寫都監, 永禧殿營建都監 提調.

- 1900년(경자, 고종37, 64세) 2월, 특진관. 4월, 장예원 경. 5월, 아들 수일 章陵 參奉에 제수. 6월, 侍從院 卿, 의정부 찬정.
- 1901년(신축, 고종38, 65세) 7월, 의정부 참정.
- 1902년(임인, 고종39, 66세) 6월, 경상북도관찰사.(「재교집략」) 겸임 경상북도재판소 판사.
- 1903년(계묘, 고종40, 67세) 11월, 知敦寧院事. 12월, 內部大臣.
- 1904년(갑진, 고종41, 68세) 3월, 璿源譜略修正時 監印堂上. 7월, 景孝殿提調.
- 1905년(을사, 고종42, 69세) 7월, 홍문관 학사.
- 1906년(병오, 고종43, 70세) 정월, 기로소에 들어감. 궁내부 특진관. 12월, 판돈녕사사.
- 1908년(무신, 고종45, 72세) 손자를 데리고 대한병원에 왕진. 12월 초 2일 죽음.
- 1910년 6월, 文貞公으로 시호를 받음.

위의 이력에서도 보듯이 그는 중앙의 청요직도 다수 역임하였는데, 그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지방관으로서 국왕의 사명을 받은 때의 기록은 거의 대부분 남기고 있다. 본 논문에서 검토할 1882년의 경상우도 암행어사 때의 기록인 「교수집략」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수집략」 4책의 구성

(제1책 春) 封書, 事目, 書啓附回啓, 筵說

(제2책 夏) 關甘

(제3책 秋) 關甘

(제4책 冬) 日記詩句

「교수집략」은 4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책에는 국왕으로부터 받은 봉서와 사목, 그리고 임무 수행 후 보고한 서계와 연설 등을 수록하였다. 둘째, 셋째 책에는 암행어사를 하는 동안에 관하의 각 고을에 보낸 공문서 즉 관문과 감결을 수록하였으며, 넷째 책에는 암행어사 임무 기간 중의 일기와 詩句를 수록하였다.



<그림 2> 교수집략

그의 집략은 대개 같은 패턴으로 편집, 정리되었다. 즉 왕명을 받은 내용, 공식 문서의 수발 내용, 일기와 시구 등의 순으로 편집되었다. 경기 암행어사 시절의 기록인 「기수집략」도 같은 형식으로 편집이 되어 권1에는 봉서와 사목, 복명시의 서계와 회계 및 연설이 수록되었으며, 권2에는 암행어사로서 발한 공문(關甘 즉 關文과 甘結)을, 권3에는 일기와 시구가 수록되었다. 다만 지방관 시절의 기록인 「부풍집략」, 「신안집략」 등에는 日錄과 공문, 鄉射禮 및 鄉飲酒禮, 講會, 鄉約 등의 내용, 箋文과 祭文, 上疏文, 酬應文, 詩句와 檢題 등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현영의 집략은 19세기말 조선의 지방 지배를 이해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특히 이현영은 각 지역의 지방관으로 재임하면서 반드시 향약과 향음주례를 통하여 백성들을 교화하려고 노력하였고, 실제로 그가 부임하는 곳마다 향약과 강회가 실시되었고 권장되었다. 참고로 「기수집략」과 「교번집략」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기수집략」의 주요 목차

- 권1 封書, 事目, 書啓 附回啓, 筵說
- 권2 關甘
- 권3 日記, 詩句

「교번집략」의 주요 목차

- 권1 日錄, 褒貶題目
- 권2 別啓, 別報, 別甘
- 권3 鄉飲, 鄉射
- 권4 講會, 鄉約
- 권5 箋文, 祭文, 上疏, 酬應文, 詩句
- 권6~7 檢題

### III. 일기를 통해 본 어사의 실상

그가 경상우도 암행어사의 임무를 명받은 것은 임오군란이 일어난 몇 달 후였다. 9월 23일 밤, 機務處<sup>3)</sup> 主事인 申箕善의 통지를 받고 입궐하여 고종을 알현하여 封書와 事目冊, 馬牌, 鑰尺을 받아 5일 후인 29일 저녁, 서대문 밖으로 나가 암행어사의 길을 떠났다.

서울에 있는 동안 그는 암행어사로 동행할 廉客과 일행들에게 연락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와 함께 암행어사의 임무를 수행한 일행은 다음과 같이 총 9명이다. 즉 최성대에서 이명수까지 4명은 그래도 문자를 알고 지방 행정의 실상을 잘 이해하여 사정을 염탐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외에 검인과 별배, 역졸들이 5명 수행하였다.

崔成大: 五衛將, 字 士行. 수원 사람.



<그림 3> 경상우도 암행어사 馬牌

3) 機務處는 1882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두어졌다가, 三軍府와 함께 統理軍國事務衙門에 통합되었다.(『고종실록』 19년 7월 25일, 12월 22일조)

申錫濂: 五衛將, 자 聖茂, 경기어사 때도 동행.

韓百永: 學官, 자 敬存.

李命秀: 宗人, 자 性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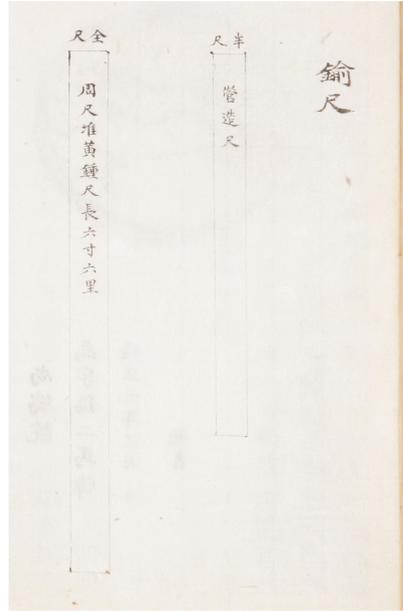
廉人: 金大善.

別陪: 李昌祿.

驛卒: 韓用凡(경기어사 때 동행)·崔君哲·金興吉.

全君: 진주 사람.<sup>4)</sup>

이들에게는 사전에 통지를 하여 경상도까지 가는 도중에 각각 합류하였다. 이현영 일행은 서울을 떠난지 6일만인 10월 11일, 경상도의 초입인 聞慶 幽谷驛에 도착하였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각 관에 엄객을 토색하고 상납을 독촉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10월 14일에는 일행을 다음과 같이 세 팀으로 나누어 각지로 파송하여 엄탐하게 하였다.



<그림 4> 경상우도 암행어사 鑰尺

<10월 14일 廉客의 구성>

-신석렴(오위장), 별배 이창록: 지례, 거창, 안의, 함양, 하동, 곤양, 남해, 단성, 산청 등 9개 지역. 경상우도의 우측 지역.

-최성대(오위장), 역졸 김홍길: 성주, 고령, 삼가, 진주, 사천, 고성, 통영, 거제, 함안, 칠원 등 10개 지역. 경상우도의 좌측 지역.

-한백영(학관), 이명수(宗人), 역졸 최군철: 문경, 함창, 상주, 선산, 개

4) 성이 소판인지 자인지 알 수 없다.

령, 금산 등 6개 지역. 경상우도의 북부 지역.

\* 이현영, 김대선(겸인), 한용범(역졸)

즉 신석렴과 이창록은 지례, 거창 등 경상우도의 우측 군현을, 최성대와 김홍길은 성주, 고령 등 경상우도의 좌측 군현을, 한백영과 이명수, 최군철은 문경, 함창 등 경상우도의 북쪽 부분을 염탐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어사 본인과 겸인 김대선, 역졸 한용범도 상주-선산-인동-대구-청도-밀양-김해-명지도-웅천-창원-칠원-함안-진해-고성-통영 등을 거쳐 가면서 염탐 등 어사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이 염탐하는 방법은 향임이나 이서, 교졸 등을 招問하거나 招見하여 읍의 사정을 탐지하였다. 각각 나누어 보낸 염객들은 한 달 후인 11월 22일, 해인사에 모여, 각 읍의 探記를 정리하였다. 이들 염객들은 활동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였다. 즉 오위장 최성대 팀이 의령에서 부이방 심봉석을 초문하는 과정에서, 심봉석이 그의 黨與 50~60여 명을 불러 모아 일행인 역졸 김홍길을 칼로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러 겨우 탈출해나온 사건도 있었다.

원래 암행어사의 임무 수행은 말 그대로 암행이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관들은 암행어사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현영이 암행어사 임명을 받은 후에도 서울에서 5일간이나 머물렀던 것이나, 10월 6일에는 경상좌도 어사에 의하여 封庫된 안동부사 李雲夏 일행을 풍등천 길가에서 먼저 통지하여 만나기도 하였으니 그의 정체를 감추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그는 이운하가 族誼, 隣誼로 얽혀 있어서 만났다고 변명을 써놓았지만. 그리고 용인에서는 그의 聘家에 유숙을 하였고, 충주에서는 승지 韓應弼 집을 방문하여 오찬을 성대하게 대접받기도 하였다. 충주에서의 대접은 한응필의 동생인 都事 韓應周의 집에서 이루어 졌는데, 승지의 지휘로 안에서 대접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가 감영이 소재한 대구에 들어가자 그날 밤에 감사는 會計裨將 五衛將 朴榮湜을 시켜 서찰을 보내왔다.5) 암행어사라 하더라도 감사나 각 읍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완벽한 암행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암행어사의 행적이 노출되자 11월 9일에는 통제사가 僉人을 시켜 편지로 문안을 하면서 뇌물(청부)과 술, 찬합을 보내왔다.<sup>6)</sup> 물론 그는 뇌물은 거절하려고 하였지만, 통제사가 다시 편지로 隣誼를 누누이 강조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하였다. 11월 16일에도 진주목사가 의복과 靑銅 30緡의 뇌물과 술, 찬합, 紙草 등 물건을 보내왔다.<sup>7)</sup> 물론 이것도 그는 여러 번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각지의 수령, 변장들의 뇌물 공세는 종종 나타났다. 11월 25일에는 합천군수가 酒肉 및 紙屬을 보내오기도 하였고,<sup>8)</sup> 26일에는 감사가 專隸를 시켜 편지와 食物을 보내왔다.<sup>9)</sup> 통제영에 노문출도했다가 작별을 한 날(1883년 1월 11일)에는 통제사가 오래 동안의 범상치 않은 친구라고 하여 贖物 200금을 주어, 부득이 받았다고 적고 있다.<sup>10)</sup>

암행어사가 공식적으로 종적을 드러내는 것은 출도를 통해서이다. 이현영의 일기에는 출도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적고 있다. 즉 그냥 출도라고 적은 것과 路文出道라고 적은 것이 있다. 즉 노문출도는 출도하는 곳에 노문을 보내어 威杖을 갖추고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냥 출도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가 출도를 한 것은 아래와 같이 암행어사 10달 사이에 총 12차례였다. 상주목, 통제영, 진주목, 성주목, 대구부 등 대응에서부터 웅천현, 칠원현과 같은 소읍에 이르기까지 두루 출도를 하였다. 통제영 등 4곳은 노문출도를 하였고, 웅천과 칠원은 출도하여 봉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5) 「교수집략」 卷冬 일기 10월 14일자.

6) 「교수집략」 卷冬 일기 11월 9일자.

7) 「교수집략」 卷冬 일기 11월 16일자.

8) 「교수집략」 卷冬 일기 11월 25일자.

9) 「교수집략」 卷冬 일기 11월 26일자.

10) 「교수집략」 卷冬 일기 1883년 1월 11일자.

出道所

상주목(1882.12.10~15)---통제영(1883.1.3~11)---웅천현(1.17~17)  
☆---김해부(1.22~27)---창원부(1.27~2.5)---칠원현(2.6~7)☆---진주  
목(2.17~29)---하동부(3.9~15)---거창부(3.29~4.5)---선산부  
(4.12~18)---성주목(4.26~5.6)---대구부(5.7~10)

\* 밑줄은 路文出道, ☆표는 封庫.

그가 처음 출도한 것은 12월 10일이다. 12월 4일 상주 남장사에 염격 일행이 다 모여서 일 주일 정도의 준비를 한 후에 12월 10일 새벽 尙州 北將臺에 출도를 한 것이다. 상주에 출도를 한 주요 목적은 尙州營將 李載旭의 貪贓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鎭營의 吏校들에게서 다짐을 받아 순영에 문서로 보내어 파출할 것을 계청하도록 하였다.

상주영장 이재옥이 “일도 모르면서 이욕만 알아서 鎭門에 출입하는 것이 모두 무뢰배들이고, 이들이 마을에 횡행하면서 무고한 백성들을 잡아 죄를 뒤집어씌우고 도적질하며 淫奸을 했다”는 것이다. 牛禁, 松禁을 범했다고 하기도 하고, 雜技酬酒하였다고 하기도 하며, 소송을 시주하고 富民에게 문안을 하는데, 이는 모두 賄賂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일반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수량이 총 10590량에 이르는 것이다.<sup>11)</sup>

암행어사가 출도를 하면, 대개 그 지역의 각종 文簿와 囚徒冊 등을査

11) 「교수집략」 卷春 書啓 尙州前營將 李載旭.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외남면 구서원동민에게서 800량, 신촌 김영화에게서 300량, 외동면 김문현에게서 400량, 이운여에게서 70량, 공성면의 안가에게서 1600량, 지천 차문서에게서 300량, 이가에게서 200량, 매곡 이부곡에게서 300량, 영수 박강아지에게서 300량, 한울 박남성에게서 200량, 읍내 김윤약에게서 300량, 김오동에게서 300량, 박성지에게서 100량, 김치선에게서 400량, 박의봉에게서 1000량, 강운상에게서 350량, 탑동 김가에게서 200량, 낙양 김응팔에게서 600량, 김비란 형제에게서 500량, 선하 김반에게서 70량, 용암 최유복에게서 50량, 평천 서가 문중에서 400량, 추산 김가에게서 300량, 북상 최병홍에게서 400량, 함창 도한 난쇠에게서 500량, 안상봉에게서 350량, 시암 권가 양반에게서 300량, 이상 10590량.

闕하고, 民狀과 각읍의 報狀에 제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다. 그가 진주에 출도하였을 때에는 진주목 동헌에 처소를 정하고 민장을 제결하였는데, 하루에 300여 장, 어떤 날에는 밤늦게까지 600~700장에 이르는 민장을 제결하기도 하였다.<sup>12)</sup> 오늘날 각 마을이나 향교, 서원, 祠宇 또는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소지류 문서 중에는 암행어사 제결이 있는 문서가 다수 남아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바로 이렇게 암행어사가 출도하였을 때에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민인들도 암행어사가 언제 어디에서 출도할 지는 대강 짐작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표3> 이현영의 경상우도 암행어사 임무 수행 경과<sup>13)</sup>

1882년

9월 23일 기무처 校理 申箕善의 동지. 고종과 대화.

29일 저녁에 서문 밖 圮橋 金五衛將 집에 나와 유숙.

10월 5일 西水庫 - 奉恩寺 - 板橋 - 豊登川 - 龍仁 - 陽智 - 竹山 - 忠州 - 達川 -//

10월 11일 문경 - 상주 - 선산 - 인동 - 대구 - 청도 - 밀양 - 김해 - 명지도 - 웅천<sup>14)</sup> - 창원 - 칠원 - 함안 - 진해 - 고성 -

11월 8일~12일 통영/ - 고성 - 사천 -

11월 14일~17일 진주 - 삼가 - 합천 -

11월 19일~29일 해인사<sup>15)</sup>/ - 성주 - 금산 - 황간 - 개령 - 상주 -

12) 「교수집략」卷冬 일기 1883년 2월 21일자, 24일자.

13) 「교수집략」卷冬 일기 요약.

14) 10월 28일, 民擾 후의 報營報草 및 營題 검토.

15) 11월 22일, 廉客 모두 모임. 각읍 探記를 修草하기 시작. 23일, 성주목사가 최위장 편에 酒果, 麻, 紙 등 물건 보냄. 11월 25일, 本倅=합천군수가 酒肉 및 紙屬을 보냄. 11월 26일, 순상이 專隸를 시켜 편지와 食物을 보냄. 11월 27일, 합천죄수 3명을 힐문하기 위해 해인사로 데리고 옴. 11월 28일, 영객 성무를 성주로, 최위장을 함창으로, 진군을 문경으로 보내고 성원은 상주 남장사로 직향하게 함.

12월 4일~14일 상주 남장사/ - 상주<sup>16)</sup> - 성주 - 초계 - 의령 - 진주  
- 사천 - 고성 - 거제 - 통영 -

12월 27일~1883년 1월 2일 통영 용화사/

1883년

1월 3일~11일 통영<sup>17)</sup>/ - 고성 - 창원 - 웅천<sup>18)</sup> -

1월 23일~26일 김해 출도<sup>19)</sup>/

1월 27일~2월 4일 창원<sup>20)</sup>/ - 칠원<sup>21)</sup> - 진주 - 단성 - 산청 - 진주  
漕倉 -

2월 15일~18일 진주 청곡사/

2월 19일~29일 진주<sup>22)</sup>/ - 진주 漕倉 - 곤양 - 남해 - 하동 - 쌍계사  
- 화개 -

3월 10일~15일 하동<sup>23)</sup>/ - 단성 - 함양<sup>24)</sup> - 안의 -

3월 20일~29일 안의 용추암(사)/

3월 29일~4월 5일 거창<sup>25)</sup>/ - 지례 - 금산 -

16) 12월 10일, 상주 북장대에 출도.

17) 1월 3~11일 통제영에 노문출도함. 1월 3일, 용화사에서 4인교를 타고 5리정에서 8인 남여로 바꾸어 탐. 세병관에 하처를 정하고 군례를 받음. 거행이 불편하여 중영으로 옮김. 題民狀, 題各邑報狀, 查閱 各項文簿-各邑囚徒冊. 만호, 별장 등 請謁. 11일, 통제사가 贖物이라고 200금, 부득이 받음.

18) 1월 17일, 웅천현 출도, 封庫. 웅천읍 남문루에 올라가서 출도함.

19) 1월 22일, 김해부 노문출도.

20) 1월 27일, 창원부 출도.

21) 2월 6일, 칠원현 출도, 封庫.

22) 2월 18일 진주목 출도. 18일 2경 쯤, 진주 북문루에 출도. 객사에 下處. 객사가 불편하여 진주목 동현으로 옮김. 21일, 민장 체결이 300여 장, 24일, 종일 밤까지 민장 체결, 600-700장. 3월 1일, 성무는 곤양으로, 경준은 하동으로, 성원 및 대선은 하동 쌍계사로, 본인과 전군, 최위장은 남해로 각각 엄탐을 함.

23) 3월 9일, 하동부 출도. 晉州妓 水仙이 찾아옴, 진주 출도시 여행자, 17일 연인처럼 작별.

24) 3월 18일, 성무는 안의로, 성원 및 최위장, 대선은 안의 용추사로 출발.

25) 3월 29일, 거창부 출도.

- 4월 12일~18일 선산<sup>26)</sup>/  
4월 19일~25일 성주 선석사/ - 고령 -  
4월 26일~5월 6일 성주<sup>27)</sup> - 칠곡 - 선산 - 대구<sup>28)</sup> -  
5월 12일~29일 상주 남장사<sup>29)</sup> -//  
6월 1일 - 연풍 - 충주 - 죽산 - 광주<sup>30)</sup> -  
6월 5일~19일 과천 화장사<sup>31)</sup>  
6월 19일 詣闕 呈書啓別單馬牌鑰尺事目冊 만남

#### IV. 서계 · 별단에 나타난 경상도 지방관

다음은 이현영이 순찰한 경상우도의 지방관의 실태를 서계, 별단을 통하여 검토해보자. 기무처의 통지를 받은 이현영이 바로 예궐하여 입시하자, 국왕 고종은 “영남 지방에 근래에 유언비어가 있다고 하니 수령의 선악과 민간의 여론을 탐지하고, 상납할 것이 지체된 게 이포로 인한 것이라면 근거가 없는 것은 탕감해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독납하라”고 하였다. 이현영은 전에도 경기어사를 한 적이 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영남은 다른 도와 다르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 고종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으니 어찌 어사의 임무가 어려울 것인가 하면서, 복명 전이라도 아뢴 것이 있으면 봉서로 기무처에 올려보내라고 하였다. 이현영은 일본에 조사시찰단으로 갈 때의 어사 명까지 포함하여 이번이 3차라고

---

26) 4월 12일, 선산부 출도. 4월 18일, 성무는 초계로, 경준은 함천으로, 전군은 성주, 고령으로 염담.

27) 4월 26일, 성주목 노문출도.

28) 5월 7일, 대구부 노문출도.

29) 5월 14일부터 서계별단 정리 시작. 全君은 진주 집으로 돌아감.

30) 6월 4일, 최위장 水原 自家로 告還.

31) 6월 5일, 역졸 김홍길 바로 서울 자기 집으로 돌아감. 6일, 성원과 군철이 4읍 探來, 군철은 집으로 감.

하면서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국왕을 알현한 후 그는 바로 봉서와 사목책 등 암행어사의 임무를 적은 매뉴얼과 마패, 유척 등 암행어사의 상징물을 받아 물러나왔다.

봉서와 사목책이 바로 암행어사가 수행해야 할 임무, 행동 규범을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목책은 암행어사 제도가 정착된 이후 정조대에 정리된 것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규범화된 내용이고 때때로 追記된 것이 있으며, 봉서에 적힌 내용은 현임 어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와 행동 규범을 적은 것이라고 하겠다.

### 1. 封書의 내용

봉서에는 암행어사가 감찰할 지역에서 특별히 수행해야 할 문제와 행동 규범을 정리한 것이다. 이현영이 받은 봉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의 대소를 막론하고 선악을 살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 및 貪汚한 자는 경중을 살펴 바로 罷遣하고, 民隱邑瘼에 관계되는 것은 조그만 것이라도 두루 살펴서 矯揉하는 방도를 강구할 것. 마음대로 조치할 수 없는 것은 登聞할 것.

- (1) 豪强武斷은 모조리 뽑아 다스릴 것
- (2) 대의를 모르고 부인을 선동하는 자는 효유하거나 징치할 것.
- (3) 從人은 따로 택하여 데리고 가고 京驛卒은 데리고 가지 말 것.
- (4) 火賊이나 土匪의 부류는 각별히 조사하여 살필 것.
- (5) 路費 2000량을 본도 감영에서 획급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적절히 획용할 것.
- (6) 지난 번의 下納條로 武衛所에 속했던 것이 지금은 填補條로 동래부에 이획. 그 장부를 조사하여 冗費의 실수를 빼고 동래부에 수송할 것.
- (7) 沿路의 道守臣과 守令도 함께 採探할 것.

(\*번호는 편의상 필자가 부여한 것임. 이하 같음.)

먼저 암행어사의 개략적인 임무를 앞 부분에 쓰고 7개 조항의 임무와 행동 규범을 지시하였다. 즉 대소에 관계 없이 모든 지방관에 대한 감찰과 백성들의 어려운 점 및 읍의 폐막을 모두 살펴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고, 만약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보고하라고 하였다. 7개 항의 내용은 豪强武斷<sup>32)</sup>을 찾아내서 징치할 것(1조), 유언비어를 날포하는 자에 대한 효유와 징치(2조)---이 조항은 특히 바로 직전 6월에 발생한 임오군란을 염두에 두고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화적이나 토비의 색출(4조), 연로의 도수신과 수령도 함께 탐문하여 보고(7조), 3조와 5조는 암행어사의 행동 규범을 단속한 것으로 종인은 데리고 가는 것은 허용하지만, 京驛卒은 데리고 가지 말고, 路費 2000량은 감영에서 받아쓰도록 하는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현영이 종인으로 선발하여 데리고 간 일행은 총 10명으로 최성대, 신석렴, 한백영, 이명수 등 어느 정도 사리와 학식이 있는 사람들과 겸인으로 김대선, 별배로 이창록을 데리고 갔으며, 역졸은 한용범, 최근철, 김홍길 등 3명이다. 이들이 경역졸인지는 알 수가 없다. 路費 2000량은 실제로 어떻게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해진 2000량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감영에서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事目冊의 내용

이현영이 받은 암행어사 사목책은 아래와 같이 총 43개 조항이었다. 전부터 내려오던 암행어사 사목 28조에다가 이후 추가된 조항 8조, 다시 추

---

32) 흔히 豪强品官, 武斷鄉曲이라고 표현되는 향촌사회의 불법, 범법자에 대한 표현이다. 품관은 향임, 향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좌수, 별감 등의 직임을 맡아 수령, 향리들과 결탁하여 읍권을 좌우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무단향곡도 연대기에 자주 보이는 용어로 양반으로서 향촌사회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부류를 말한다.

가된 조항이 5조이다.

- (1-1)讀書抱才의 선비, 武勇絶倫한 사람을 조사하고, 孝烈이 탁이한 사람도 채탐하여 보고할 것.
- (1-2)穀簿를 일일이 反閱하여 논감할 것.
- (1-3)각 곡물의 分留. 濟民倉, 浦項倉의 곡물을 道臣이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加分. 수령이 營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分留한 자는 논죄.
- (1-4)儲置米 反閱할 것.
- (1-5)3漕倉 폐단. 除留錢米의 那移虛留 등의 폐는 수령과 도신을 논계할 것.
- (1-6)架山山城錢木 那移 등도 계문할 것.
- (1-7)棘山倉 公鹽 質販 때의 폐단.
- (1-8)錢還立本은 법금. 統營立本도 논죄할 것.
- (1-9)東萊 互市 때의 負債, 釜倉의 곡식 欠逋, 公作米木 하납시 濫奉 금단.
- (1-10)역로 凋弊; 郵官의 受賂 立馬, 토호의 私買驛畚, 大小使行의 濫把 人馬.
- (1-11)군역사목; 侵魚海民, 隱匿餘結 私用의 경우 封庫.
- (1-12)田政結災; 以起爲陳 濫報取剩의 경우 所用의 공사간에 봉고.
- (1-13)연읍 漁戶의 進上情債
- (1-14)軍丁의 폐단; 첩역, 궤역, 황구백골, 徵隣侵族의 폐
- (1-15)武備의 소홀; 군기, 성지, 전선, 봉수 등 시찰
- (1-16)嶺隘關防; 좌도병수영의 이설 논의. 華山에 대한 울산, 기장에 대한 동래 등 편부를 조사 보고. 상주 松峙 사이길 방색, 조사 보고.
- (1-17)內寺奴婢의 폐단; 추쇄 규정을 폐하고 영읍에 부쳐서 비총법을 창설.

- (1-18)戢盜之政; 도적 막기 및 起耜를 핑계로 폐단을 끼치는 것은 각 영장이 察飭.
- (1-19)重獄, 大訟은 조사하여 冤枉을 펴줄 것.
- (1-20)官長의 濫刑濫杖
- (1-21)封山
- (1-22)猾吏, 토호, 鄉戰
- (1-23)정배죄인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금지
- (1-24)수령이 邑婢를 潛奸하는 것, 아권을 남술하는 것 금지, 牛酒禁.
- (1-25)傷風敗俗, 左道惑衆, 牟利害民, 토호의 養戶防結, 差人의 濫徵虐民者.
- (1-26)봉고는 문적을 적발한 뒤에 거론, 吏奴를 刑訊하여 다짐을 받는 것은 근거 문서를 가지고 시행.
- (1-27)치적이 훌륭한 수령 보고.
- (1-28)이외에 法外橫頒, 民間疾苦는 논계.

- 
- (2-1)어사의 先文 출거자 외의 암행에는 원래 군관 명색이 없음. 각사의 서리를 택하여 술거하는 것은 조정에서 알고 있으나 이외의 한잡한 부류를 다수 술거하여 염탐하게 하는 것은 종적을 비밀리에 할 수 없고 민읍에 폐을 끼치니 엄금.
- (2-2)馬政에 특별히 신경을 쓸 것, 특히 목장읍.
- (2-3)山火田 남세의 폐단. 비총이라고 칭하여 加括.
- (2-4)문읍 수령이 乘轎하는 것 염탐.
- (2-5)祀典; 壇壝, 祭品 등 염탐.
- (2-6)私情으로 보고하지 말 것.
- (2-7)字恤典則; 걸인 등 恤政.
- (2-8)미진조건은 추후마련.
-

- (3-1)刑具; 鋸尺 여부 고찰하여 기준대로 할 것.
- (3-2)驛路乘馱; 營闔 裨校 남승 폐단.
- (3-3)山火田, 公私屯田 등 執卜.
- (3-4)陳田 3년후 수세.
- (3-5)加德鎭의 제반 폐단.

위의 사목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1)부세 및 제반 잡세에 관한 것(1-2 / 1-3 / 1-4 / 1-5 / 1-6 / 1-7 / 1-8/ 1-9/ 1-11/ 1-12/ 1-13/ 1-14/ 1-17), (2)역로, 무비, 관방, 정배죄인, 封山 등 국가의 기능에 관한 것(1-10/ 1-15/ 1-16/ 1-21/ 1-23), (3)치안, 형옥, 토호 및 향진, 상풍패속 등에 관한 것(1-18/ 1-19/ 1-20/ 1-21/ 1-22/ 1-25), (4)인재 천거, 수령 평가, 봉고의 근거 확보 등에 관한 것(1-1/ 1-24/ 1-26/ 1-27/ 1-28) 등이다. 추가된 8조목에는 어사의 從人의 제한, 馬政, 山田·火田의 수세, 乘輜의 제한, 祀典 및 恤典의 신칙 등이다. 다시 추가된 조목은 다시 刑具, 驛路濫乘, 산진·화진·둔진·진진의 수세, 加德鎭의 폐단 등에 대하여 살필 것을 지시하였다.

### 3. 압행어사 임무 수행 결과의 보고와 처리

압행어사 임무 수행의 결과는 서계와 별단으로 보고하였다. 물론 도중에 직접 중앙에 보고할 수가 있고, 고종은 특별히 보고할 것이 있으면 기무처에 보고하도록 해서, 統營에 있을 때 機務處에書啓하였다. 즉 到境한지 3달이 되어 列邑을 두루 다녔는데, 곡식은 풍년이 되어서 민심이 안정되었고, 근래에 浮言煽動者는 없으며, 火賊土匪는 山邑嶺路에 간혹 있으나 낭자하지 않아 각 진영에 관문을 보내 讖捕하게 하였고, 공납 상송을 엄독하였으며, 吏逋도 收刷하였고, 수령의 선악의 허실을 채탐하였으며, 民邑弊瘼은 장차 별단에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1882년 12월 10일에 상주목에서 처음으로 露蹤한 사실도 보고하였다.<sup>33)</sup> 중간에 서계를 한 것

은 암행어사에 임명되어 입시를 했을 때에 일에 따라 보고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암행어사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은 다음 해인 1883년 6월 19일이었다.

암행어사의 보고서는 서계와 별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서계에는 순행한 열읍의 지방관에 대한 평가이다.(서계의 주요 내용과 결과는 <별표1> 참조) 서계에서 이현영이 평가한 경상우도의 지방관은 監司統制使兵使虞侯營將 등 14명, 守令察訪邊將監牧官 등 105명, 왕래한 충청도 연로의 營將守令察訪 4명, 京畿沿路 監司營將守令察訪 등 9명으로 총 132명에 이르렀다. 물론 연로의 수령에 대한 평가는 형식적인 것에 그친 것이었고, 주로 경상우도의 수령과 변장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같이 보고된 別單에서 (1)結政, (2)還結, (3)漕政, (4)沿海各邑의 魚鹽藿船隻等稅, (5)각 浦口의 百一稅, (6)통영의 還餉穀, (7)대구부의 邑弊, (8)성주목의 又卜結, (9)晉州昌善牧場의 屯稅 등과 (10)各驛의 凋敗 상황, 마지막으로 (11)才行이 篤實하고 孝烈이 탁이한 상주 유학 趙東佐 등을 추천하였다.

암행어사의 서계와 별단은 암행 중에도 수시로 염객들과 모여서 정리를 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5월 14일부터 尙州 南長寺에서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임무를 마치고 그는 과친의 화장사에 와서 서계와 별단을 정서하여 6월 19일 서울로 들어가 바로 예궐하여 서계와 별단, 마패, 유척과 사목책을 올렸다. 그날 밤 3경에 入侍하라는 명이 있어 樂善齋에 들어가 보고하였다.

고종은 서계와 별단을 이미 다 열람한 뒤였고, 대화에서도 서계와 별단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였다. 특히 치적이 있는 수령을 말하라고 하여 거창부사 박규동을 거론하였다. 또한 公行時에 盤纏費를 주는 데도 驛이 敗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묻자, 이현영은 역이 퇴락하게 되는 이유

---

33) 「교수집략」卷春, 書啓.

가 공식적인 반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私通으로 각역에 責供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고종은 또한 재행과 효열로 거론된 조동좌, 신돈구, 이윤적 등의 행실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었다.

또한 露蹤한 읍이 몇 군데이고 대구에는 왜 들어갔는가 하고 묻기도 하였다. 그는 대구에 들어간 것은 그곳이 감영이 있는 곳이어서 들어갔고, 감영의 文簿를 조사(查覈)하였다고 하였다. 고종은 어사와 감사, 통제사, 병수사가 어떻게 예(抗禮)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그리고 往還에 소요된 달 수, 農形, 어디에 돌아와서 晝膳을 썼는가, 언제 화장사에 도착하여 오늘 들어왔는가 등 세세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昨秋의 年事는 모두 풍년이지만, 今春의 麥農은 비로 조금 欠縮이 있었다, 과천 華藏寺에서 서계와 별단을 정리하였다, 6월 7일에 화장사에 도착하여 오늘 들어왔다는 보고를 하였다.

고종은 또한 지방 군읍에서 어사가 지나간 후에 변통된 것이 도로 원위 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어사가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하며 개탄하기도 하였으며, 임오군란 이후의 영남 민심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그는 보고서에 쓰여진 대로 지방의 민심은 서울서 들은 소문과는 달리 편안하며, 다만 火賊이 鎭營을 혁파 후에 더욱 강해졌다고 보고하였다.

6월 19일, 이현영이 고종에게 암행 결과를 보고한 열흘 후인 6월 29일, 여러 가지 사후 조치가 이루어졌다. 6월 29일에는 전교를 내려, 전전통제사 정낙용, 전전창원부사 양주현, 전전장흥부사 윤구 모두 拿來하여 구속 하도록 하였고, 죄질이 나쁜 전전통제사 정낙용은 金吾堂上이 開坐하여 通衢에서 엄형 1차 후에 遠惡島에 圍籬安置하도록 하였고, 通衢開坐 시에 百官이 序立하도록 하였다.

7월 1일에는 吏曹에서 문반 인사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回啓하였다. 즉 창원 전전부사 양주현, 진주 전목사 윤홍선, 하동 전부사 이봉호, 함양 전군수 이영문, 남해 전현령 전세진은 이미 처분했으니 다시 논의할 것이 없고, 고성 전전부사 이병익, 사천 전전현감 유공수는 이미 감처했으니 물

론하고, 칠원 전전현감 이상덕, 웅천 전현감 이견부는 수계에 이미 청하여 담당 관청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였으니 다시 논의할 것이 없고, 진주 전전목사 신석유, 성주 전목사 홍병희, 선산 전부사 기봉수, 거제 전전부사 윤석원, 곤양 전군수 신태희, 곤양 전전군수 이상덕, 진해 전현감 신정원, 자여 전찰방 김용현 등 위 8읍 전임 수령과 1역 찰방은 우선 파직하여 담당 부서로 하여금 나문하여 엄중히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창원부사 최치영은 從重推考, 의령현감 민영학은 推考하도록 하였다. 감사 조강하, 전감사 윤자승, 경기감사 김홍집, 광주유수 박영효는 推獎했지만, 道臣이나 守臣은 體重하므로 勿論하고, 본도 연로 수령, 찰방 등은 우수한 성적도 적고 하자도 현저한 것이 없으니 그냥 두고, 그 외의 곤수, 중군, 우후, 영장, 변장, 감목관 등은 병조에서 稟處하도록 하였다.

7월 4일에는 兵曹에서 무반 인사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回啓하였다. 전 전통제사 정낙용, 전병사 조희승, 상주 전영장 이재욱 등은 이미 처분했으므로 다시 논의하지 않고, 전전우후 이병수는 비록 다른 일로 지금 編配 중이지만 담당 부서에서 拿問하여 처치하도록 하고, 적량 전첨사 김량헌은 추고하도록 하였다. 가배량만호 김순기는 이미 加瓜請狀에 나타나고, 장목포 전전별장 김경율 두 진장은 加資해야 하지만, 이것은 은전에 해당하므로 上裁를 요청하며, 통제사 이원희, 전통제사 정기원, 병사 백남익, 전전병사 조희찬 등은 推獎이나 制闕의 事體가 수령, 변장과 다르므로 지금은 勿論하고, 그 나머지 영장, 중군, 우후, 변장, 감목관 등은 별로 우수한 치적도 없고 드러난 비리도 없으므로 그냥 둔다고 처리하였다.

위와 같이 암행어사는 경상우도 각 지역을 염탐하고 순찰하며 수령과 변장의 잘잘못을 가려서 비리가 현저하여 증거가 드러날 경우에는 출도하여 바로 봉고하였으며, 그 외의 다른 수령, 변장들은 서계를 통하여 拿問 治罪하거나 추고를 하였다. 또한 잘 통치한 수령, 변장에게는 가자하는 은전을 베풀도록 추천하기도 하였다.

## V. 맺음말

이 글에서 다룬 敬窩 李鎰永은 고종대의 중요한 종친 관료로서 문과에 합격하여 내외의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하였다. 특히 그는 외직을 맡았을 때에는 재임 중의 주요한 문서나 일정, 사업 등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3번에 걸쳐서 암행어사의 임무를 부여 받았는데, 본 논문에서 정리한 것은 경상우도 암행어사 시의 기록이다. 1882년 9월 임오군란 직후에 암행어사의 명을 받아 경상우도를 두루 돌아다닌 것이 8, 9개월에 걸쳐서 거의 5, 6천 리를 다녔다. 그때의 자료를 그는 封書, 事目, 書啓, 筵說, 關文과 甘結, 日記, 詩句 등 대부분의 자료를 남기고 있다.

암행어사 이현영은 평소에 그가 알던 사람 10여 명에게 연락하여 암행어사의 임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즉 문자를 알고 일을 잘 아는 오위장 급의 인원, 어사의 위엄을 갖추어 수 있도록 겸인과 별배, 역졸 등도 함께 참여하였다. 이들은 3~4개 팀으로 나누어 각 지역을 두루 암행 염탐하였으며, 염객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위험한 경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암행어사라고 하여 모든 업무를 비밀리에 처리하지는 않았다. 경상감사에게는 공식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다른 수령, 변장들도 암행어사의 탐찰 사실을 눈치 채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수집 자료를 토대로 하여 암행어사가 각 지역에 출도를 하는데, 수령이나 변장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출도를 하기도 하고, 큰 지역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노문을 보내어 위엄을 갖추어 출도를 하였다. 출도를 한 기간은 7일 내지 10일에 이르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인근 지역의 文簿와 囚徒를 查閱하고 각 읍에서 보고한 報狀이나 민인들의 民狀을 題決하였다. 특히 민인들의 민장은 하루에 500~600장을 밤늦게까지 제결해야 할 정도로 과다하였다. 또한 몇 개의 읍에는 封庫罷職하여 이웃 읍 兼官에게 文簿와 열쇠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암행어사의 임무는 국왕이 내린 봉서와 사목책에 적혀 있다. 봉서에는

특별히 국왕이 당부한 내용이, 그리고 사목책에는 전부터 내려오던 암행어사 조사, 염탐의 매뉴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시를 토대로 여러 달에 걸쳐서 염탐하고 순행하여 처리한 최종적인 보고서는 서계와 별단으로 국왕에게 제출되었다. 국왕은 서계와 별단을 토대로 암행어사를 직접 면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순행 지역의 지방관에 대한 처벌, 표창과 민은과 폐막에 대한 조치를 해당 부서에 지시하였다.

이헌영의 경상우도 암행어사 때의 기록인 「교수집략」을 통해서 우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동안 암행어사 자료를 통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었는데, 앞으로도 암행어사 자료를 통하여 조선후기의 생활사, 지역사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0일(金)에 투고 완료되어,  
2009년 11월 11일(水)부터 12월 1일(月)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9년 12월 4일(金)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별표1> 경상우도 압행어사 이현영의 서계에 의한 이조병조의 처분 결과

監司統制使兵使虞侯營將			
순번	직명	이름	평가 및 처분 결과
1-1	監司	趙康夏	○推獎 體重勿論(吏曹回啓)
1-2	前監司	尹滋承	○推獎 體重勿論(吏曹回啓)
2-1	統制使	李元會	○推獎 體異勿論(兵曹回啓)
2-2	前統制使	鄭岐源	○推獎 體異勿論(兵曹回啓)
2-3	前前統制使	鄭洛鎔	☆拿囚/ 已處母論(兵曹回啓)
3-1	右兵使	白南益	
3-2	前兵使	趙羲升	☆已處母論(兵曹回啓)
3-3	前前兵使	趙羲贊	○推獎 體異勿論(兵曹回啓)
4-1	右兵虞侯	趙鍾哲	
4-2	前虞侯	尹守榮	
4-3	前前虞侯	李秉洙	☆拿處(兵曹回啓)
5-1	尙州營將	韓衡履	
5-2	前營將	李載旭	☆已處母論(兵曹回啓)
6	晉州營將	閔致一	
守令察訪邊將監牧官			
1-1	昌原府使	崔致永	☆從重推考
1-2	前前府使	梁柱顯	☆拿囚/已處母論(吏曹回啓)
2-1	尙州牧使	李喆在	
2-2	前牧使	李禧	
2-3	前前牧使	朴憲陽	
3-1	晉州牧使	趙岐淳	
3-2	前牧使	尹弘善	☆已處母論(吏曹回啓)
3-3	前前牧使	申錫游	☆罷職後拿問嚴勘(吏曹回啓)
4-1	星州牧使	李容準	
4-2	前牧使	洪秉僖	☆罷職後拿問嚴勘(吏曹回啓)
5-1	金海府使	李膺愚	
5-2	前府使	金益成	
6-1	善山府使	趙駿九	
6-2	前府使	金鳳洙	☆罷職後拿問嚴勘(吏曹回啓)
7-1	河東府使	趙羲中	

7-2	前府使	金鳳鎬	☆已處毋論(吏曹回啓)
7-3	前前府使	張斗煥	
8-1	巨濟府使	河承洛	
8-2	前府使	尹泳奎	
8-3	前前府使	尹錫元	☆罷職後拿問嚴勘(吏曹回啓)
9	居昌府使	朴奎東	○
10-1	固城府使	鄭海植	
10-2	前前府使	李秉翼	☆已勘毋論(吏曹回啓)
11-1	草溪郡守	禹翼鼎	
11-2	前郡守	洪必裕	
11-3	前前郡守	李載駿	
12-1	咸陽郡守	安光默	
12-2	前郡守	金永文	☆
12-3	前前郡守	金鳳洙	☆뒤에 선산부사로?
13	咸安郡守	吳膺壽	
14-1	昆陽郡守	李教性	
14-2	前郡守	申宅熙	☆罷職後拿問嚴勘(吏曹回啓)
14-3	前前郡守	李相憲	☆罷職後拿問嚴勘(吏曹回啓)
15-1	陝川郡守	金龍鎭	
15-2	前郡守	洪恩燮	☆民擾/ 罷職後拿問嚴勘(吏曹回啓)
15-3	前前郡守	洪祐慶	
16-1	金山郡守	尹詮(찬)	
16-2	前郡守	尹昌燮	
16-3	前前郡守	金明洙	
17-1	南海縣令	朴準成	
17-2	前縣令	趙鍾哲	
17-3	前前縣令	田世鎭	☆
18	開寧縣監	徐相熙	
19-1	鎭海縣監	權致鎬	
19-2	前縣監	申正遠	☆罷職後拿問嚴勘(吏曹回啓)
20-1	咸昌縣監	朴宣陽	
20-2	前縣監	閔泳悅	
21-1	知禮縣監	李周弼	
21-2	前縣監	申泰榮	

22-1	高靈縣監	金謙秀	
22-2	前縣監	洪恩燮	
23-1	山淸縣監	兪致興	
23-2	前縣監	任憲準	
24	丹城縣監	閔致駿	
25-1	泗川縣監	白樂均	
25-2	前縣監	尹昌根	
25-3	前前縣監	柳肯秀	☆已勘母論(吏曹回啓)
26-1	三嘉縣監	申斗善	
26-2	前縣監	權仁圖	
27-1	漆原縣監	李漢英	
27-2	前縣監	南錫龍	
27-3	前前縣監	李相德	☆攸司稟處母論(吏曹回啓)
28-1	熊川縣監	權一圭	
28-2	前縣監	李建溥	☆民擾 /攸司稟處母論(吏曹回啓)
29-1	聞慶縣監	鄭寅壽	
29-2	前縣監	金龍鎮	
29-3	前前縣監	宋在和	
30	安義縣監	李象學	
31	金泉察訪	朴衍壽	
32-1	沙斤察訪	高益鎮	
32-2	前察訪	崔綸在	
33	召村察訪	李商新	
34-1	自如察訪	裴殷星	
34-2	前察訪	金鏞賢	☆罷職後拿問嚴勘(吏曹回啓)
35-1	加德僉使	異海晉	
35-2	前僉使	趙性駿	
35-3	前前僉使	孫亮文	
36	彌助項僉使	姜在弘	
37-1	赤梁僉使	禹汶國	
37-2	前僉使	金亮憲	☆推考(兵曹回啓)
38-1	龜山浦僉使	任憲翼	
38-2	前僉使	金俊煥	
39	薺浦萬戶	趙泓默	

40	玉浦萬戶	池達駿	
41	平山浦萬戶	李筍亨	
42	唐浦萬戶	宋在洙	
43	助羅浦萬戶	韓景植	
44	天城浦萬戶	姜泰佑	
45	加背梁萬戶	金順基	○加資上裁(兵曹回啓)
46	安骨浦萬戶	文永佑	
47	永登浦萬戶	洪鍾完	
48	知世浦萬戶	金時鎮	
49	蛇梁萬戶	李國明	
50-1	栗浦權管	崔祥億	
50-2	前權管	金基鉉	
51-1	三千浦權管	邊順哲	
51-2	前權管	金時鎮	뒤에 지세포만호로.
52	南村別將	朴基璘	
53	舊所非別將	金鍊玟	
54-1	金烏別將	姜星載	
54-2	前別將	金敬律	
55	鳥嶺別將	朴東漢	
56	益山別將	李德淳	
57	禿用別將	李昌鉉	
58	蟾津別將	方柄斗	
59	晉州監牧官	元顯昌	
忠清道 沿路 營將守令察訪			
1	忠州營將	徐光泰	
2	忠州牧使	李載純	
3	延風縣監	鄭基贊	
4	連原察訪	韓容高	
京畿 沿路 營將守令察訪			
1	京畿監司	金弘集	○推獎 體重勿論
2	廣州留守	朴泳孝	○推獎 體重勿論
3	中軍	李殷洙	赴任未幾
4	判官	李商應	
5	竹山府使	方天鏞	

이현영의 「嶺緯集略」을 통해 본 압행어사의 실상과 경상도 지방관 김현영

6	龍仁縣令	朴應鍾	
7	陰竹縣監	李源麟	未赴任
8	陽智縣監	朴齊文	
9	果川縣監	許 遷	

\* 宜寧縣監 閔泳學: 推考

\* 長木浦前前別將: 加資上裁(兵曹回啓)

참고문헌

1) 제도사적 연구

전봉덕, 『한국법제사연구(암행어사도연구 기타)』, 서울대출판부, 1968

2) 생활사, 미시사적 연구

오수창, 「암행어사 길---1822년 평안남도 암행어사 박내겸의 성실과 혼돈」,  
『역사비평』 2005년 겨울호(통권 73호), 역사비평사. 「암행어사가 되  
어 떠나는 200년 전 평안도 여행」

(<http://www.hallym.ac.kr/~changa/tour/pytour/pyindx.html>)

조성산, 「박문수, 전설적인 암행어사 혹은 뛰어난 소론 경세 관료」, 『내일을  
여는 역사』 14호, 2003년.

권내현, 「<춘향전>-이몽룡을 통해 본 조선의 양반 관료」, 『역사비평』 2003  
년 겨울호(통권 65호), 역사비평사.

육재용, 「암행어사 소설에 드러난 어사의 기능과 역할」, 『한민족어문학』 제37  
집, 한민족어문학회, 2000년.

3) 사회사적 연구

송찬섭, 「1862년 농민항쟁기 파견관리 李參鉉(1807~1872)의 활동」, 『歷史教  
育』 109집, 역사교육연구회, 2009년.

김명숙, 「암행어사 김정희가 본 19세기 전반기 충청우도의 사회상」, 『한국사  
상사학』, 2007년.

한철호, 「고종 친정초(1874) 암행어사 파견과 그 활동---지방관 정치를 중심  
으로」, 『사학지』, 단국사학회, 1998년.

김명숙, 「조선후기 암행어사 제도의 일 연구---고종 5년(1868)의 서계별단  
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987년.

한상권, 「어사 파견과 지방 지배 강화」,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1986년.

곽동찬, 「고종조 토호의 성분과 무단 양태---1867년 암행어사 토호별단의 분석」, 『한국사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75년.

#### 4) 행정학에서의 응용

윤재풍, 「暗行御史制度에 관한 事例研究: 暗行御史 朴冠陽의 書啓別單의 分析」, 『한국행정사학회지』, 한국행정사학회, 2006년.

임병준, 「암행어사제도의 운영 성과와 한계」, 『법사학연구』, 『한국법사학회』, 2001년.

김정기, 「조선조 지방행정통제와 암행어사제의 역할 및 한계」,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회, 1999년.

강길봉, 「Ombudsman 제도와 暗行御史制度와의 비교 연구---한국적 민원구제제도의 정착화를 위하여」,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회, 1994년.

백상기, 「조선조 감사제도 연구---조선시대의 감사제도, 조선조 臺諫 및 暗行御史制度」, 『민족문화연구총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년.

#### 5) 자료 소개

한상권, 「(자료소개)역사연구의 심화와 사료이용의 확대---암행어사 관련자료의 종류와 사료적 가치」, 『역사와현실』(사목 및 봉서: 실록/ 비변사등록/ 홍재전서/ 일성록, 서계, 별단: 縵衣錄(규고4250-102), 書啓輯錄(규15083), 일성록)

고석규, 「(자료소개)八道御史賚去事目」, 『韓國文化』7,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Real State of Amhaeng-Eosa and Magistrate of  
Gyongsang-do Seeing from Yi  
Heon-Young(1837~1908)'s *Gyosu-Jimryak*

Kim, Hyun-young

In latter Joseon period, the system of Amhaeng-Eosa which has investigated the a chief magistrate and commander of local area, has established regularly and systematically, in spite of overlapping with Gwanchalsa(a provincial governor) in the function. This thesis describes the real state of activities of Amhaeng-Eosa and the a chief magistrate and commander of Gyongsang-do area through the *Gyosu-Jimryak* which contains all the activities of Amhaeng-Eosa of Gyongsangwoo-do(right area of Gyongsang-do) by royal family bureaucrat Yi Heon-Young who has dispatched in 1882.

The mission of Amhaeng-Eosa was written in Bongseo and Samok descended by the King. The main point indicated specially by the King was written in Bongseo, and the articles and precedent of investigating handed down was written in Samokchaek. Yi Heon-Young appointed as Amhaeng-Eosa has accomplished his mission with his attendants who have been called by him. Their status was Owijang(五衛將, lower rank officier) and Yokjol(驛卒, soldier of station) etc. Their activities of some months has reported to the King as Seogye and Byoldan. The King has interviewed Yi

Heon-Young directly and ordered punishment and reward to unlawful chief magistrate and commander of local area in Seogye. And the King also has instructed the management to the abuses and problems in Byoldan.

Yi Heon-Young as Amhaeng-Eosa has dispatched three or four groups of spy and observed secretly the every area. So the spys have often falled in danger. But all the courses of Amhaeng-Eosa are not accomplished secretly. He has sometimes informed his appreance to Gwanchalsa and other magistrates and commanders, so they also have become aware of the spy of Amhaeng-Eosa. Amhaeng-Eosa has made Chuldo(Appearance od Amhaeng-Oesa) if he should manage the abuses promptly which have collected by spying. Chuldo has made suddenly, so the magistrate or commander have not been aware of his appearance. But in some case he has appeared openly with implements informing Chuldo by Nomun(路文, document of official travel). If he has been appeared, he has stayed 7 or 10 days for investigating documents and account book, inspecting the prisoners and judging the petitions. Some time he has blocked up the storehouse and fired magistrate or commander.

Key Words: Amhaeng-Eosa(暗行御史, A Royal Secret Investigator), Gyongsang-do(慶尙道), a chief magistrate and commander of local area, Yi Heon-Young(李金憲永), *Gyousu-Jimyak*(嶠繡集略), Chuldo(出道, Appearance for a Summary Decision), Bongseo(封書, Secret Instructions from King) Samok(奪目, Article Book of Investigating), Bong'go(封庫 Blocking up the Storehouse) Pajik(罷職, Dismissal from Office)